

도민의 기본권리  
복지권은  
우리 손으로!!

6.13 지방선거

## 福祉京畿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제안

요약집

경기도사회복지연대

6.13 지방선거

## 福祉京畿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제안

요약집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도민의 기본권리  
복지권은  
우리 손으로!!

6.13 지방선거

# 福祉京畿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제안

요약집

# 福祉京畿 실현을 위한 5대 사회복지 공통과제

하나. 단일임금체계 구축 : 2019년도 시행

둘. 31개 시·군 복지 균형발전

셋. 사회정책부지사 제도 신설

넷. 취약계층 사회적 일자리 지원 강화

다섯. 미래를 위한 청년 주거복지 지원

# 단일임금체계 구축 : 2019년 시행

하나.

福祉京畿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제안



서울시 2014년도 선거공약, 2017년부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시행”으로 복지부 가이드라인 약 115% 적용 지급

- 서울시 장기근속 유급휴가제도 실시 및 복지포인트 부여

인천시 2014년도 선거공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대폭 개선”, 2018년도 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적용 지급

- 인천시 10일 이내 병가 유급화, 도서벽지수당제 및 장기근속휴가제도 도입

충남 2014년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적용 지급

부산시 2018년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적용지급, 공무원 보수수준 상응 처우 노력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직종별·지역별 차등 심함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일 뿐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음
-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별, 지역별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기준 편차 심함

따라서 도내 어느 시설,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임금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단일임금체계 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우수인력의 서울 등 인근지역으로의 전출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음

“경기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책무가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1년 제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발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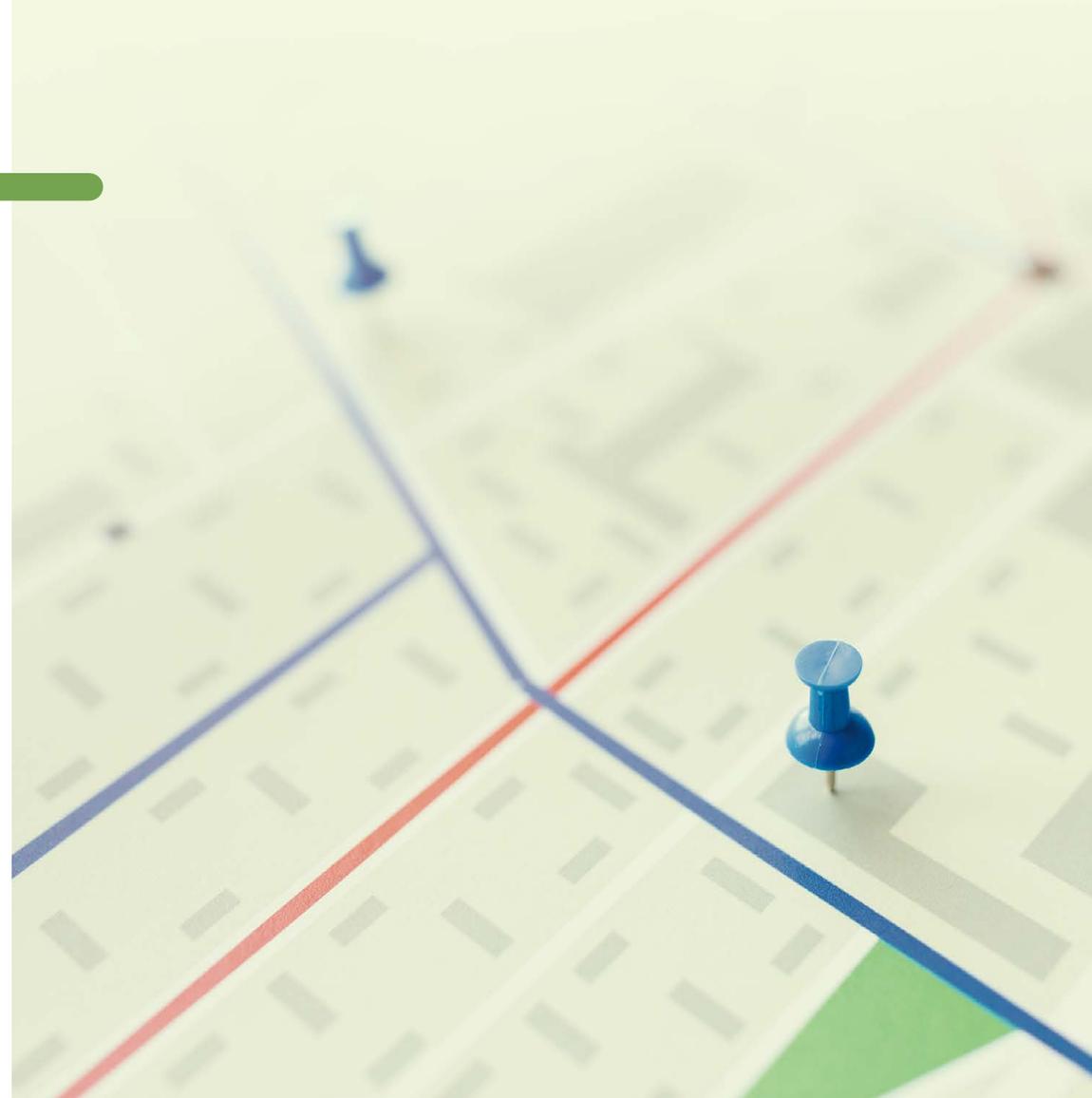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④ (생략)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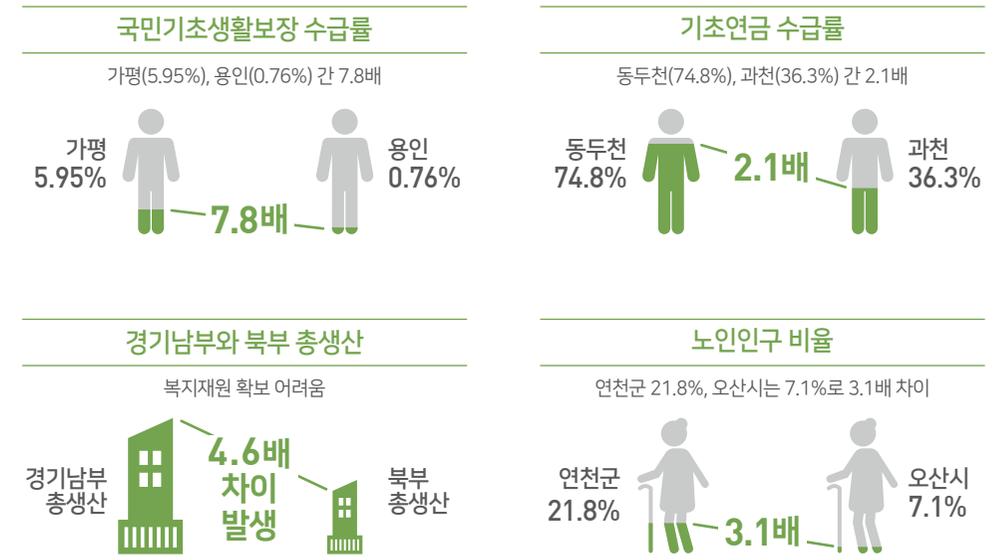
-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http://sasw.or.kr/zbxe/hotissue/418511>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 임금'적용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672827&code=11131400&cp=nv>
- 2018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대폭 개선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761>
-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 마련한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27\\_0000263675&cID=10811&pID=108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27_0000263675&cID=10811&pID=10800)

# 경기도 31개 시·군 복지 균형발전 지원

福祉京畿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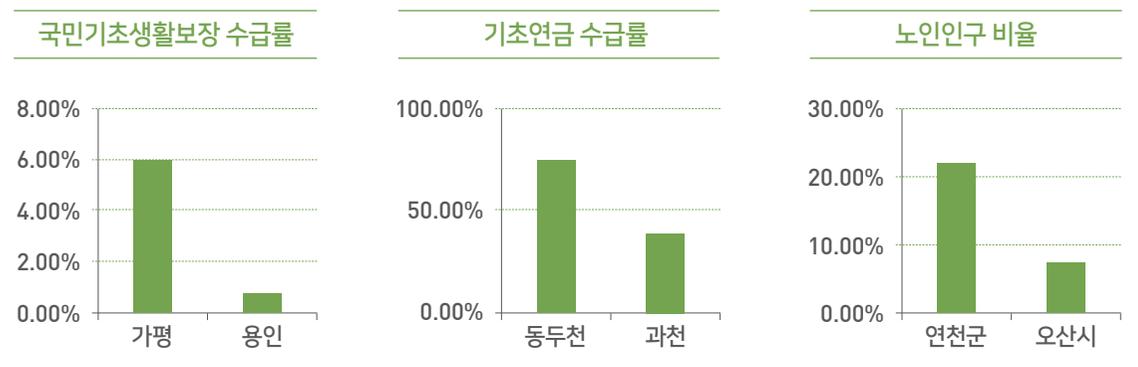


경기도는 31개 시·군간, 북부와 남북간 지역복지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 및 장애인 돌봄, 건강, 복지인프라 등) 격차가 심각함. 지역복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필요.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를 설치 (현재 중앙정부에만 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 설치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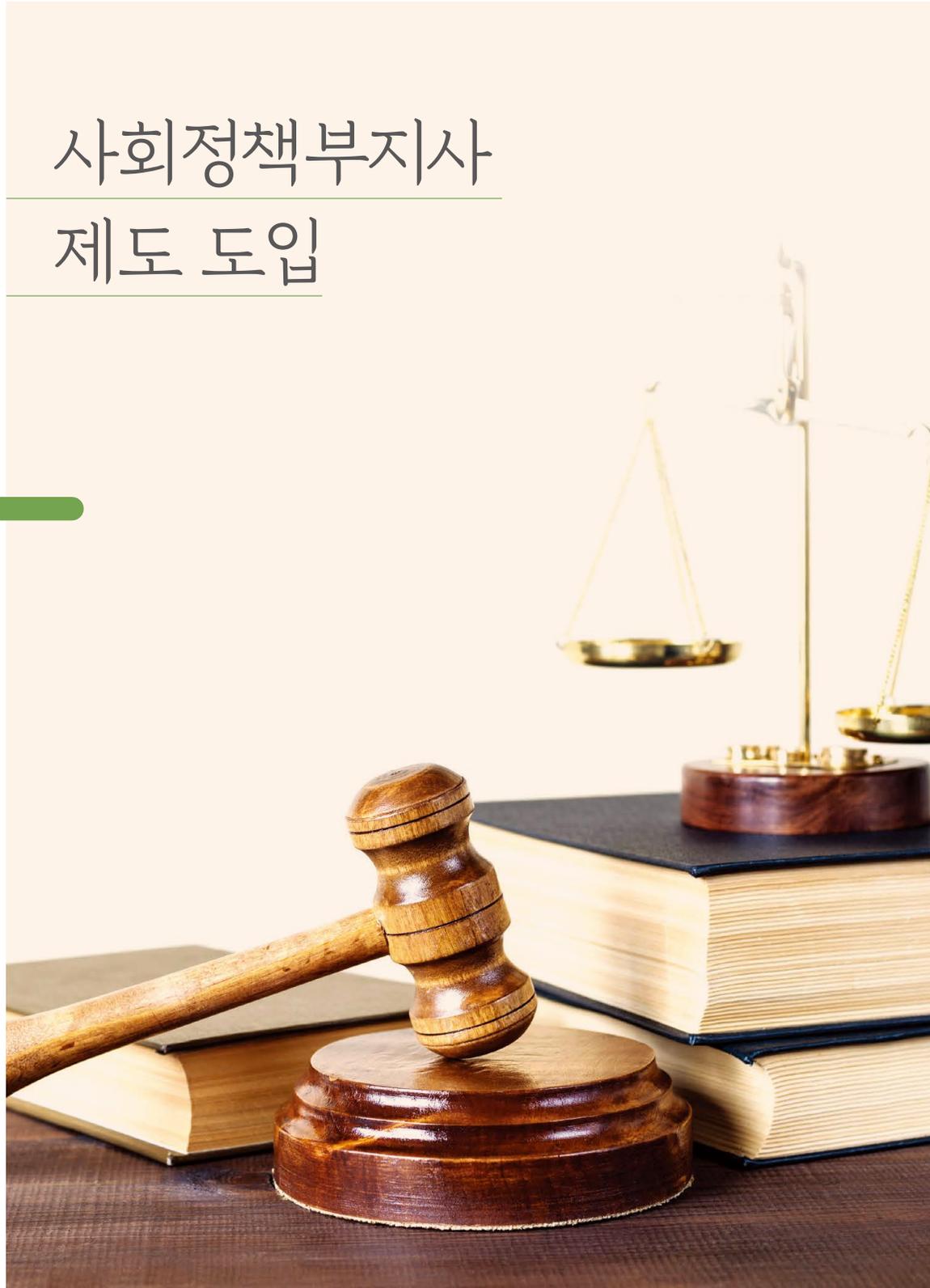
- 경기복지재단 부설조직으로 위 발전센터 설치, 31개 시·도 간 복지균형발전 도모



# 사회정책부지사 제도 도입

셋.

福祉京畿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제안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져 있고, 서울 중심으로 31개 시·도로 분할되어 있음  
타 광역시도 보다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지역별 편차가 크게 발생,  
이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정 필요

- 남부 예산 33,277억원(전체 16.9%), 북부 9,635억원(4.9%)
- 남부와 북부의 균형 있는 조정이 절실함
- 복지예산의 증가로 도 총 예산의 약 37% 차지(72,319억원)\*

복지와 교육, 보건, 교통, 문화, 환경분야 등 정책과도 적극 협력 필요한데,  
이를 주관하고 협력 조정할 책임 있는 사회정책부지사가 필요함

### 사회정책부지사의 주요 업무

- 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 간 편차 해소 노력
- 사회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검토 및 평가
- 교육 및 환경분야 등 관련 분야와의 정책 협력 조정
-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능력 개발 계획

복지예산 증가 추이('15 ~ '17)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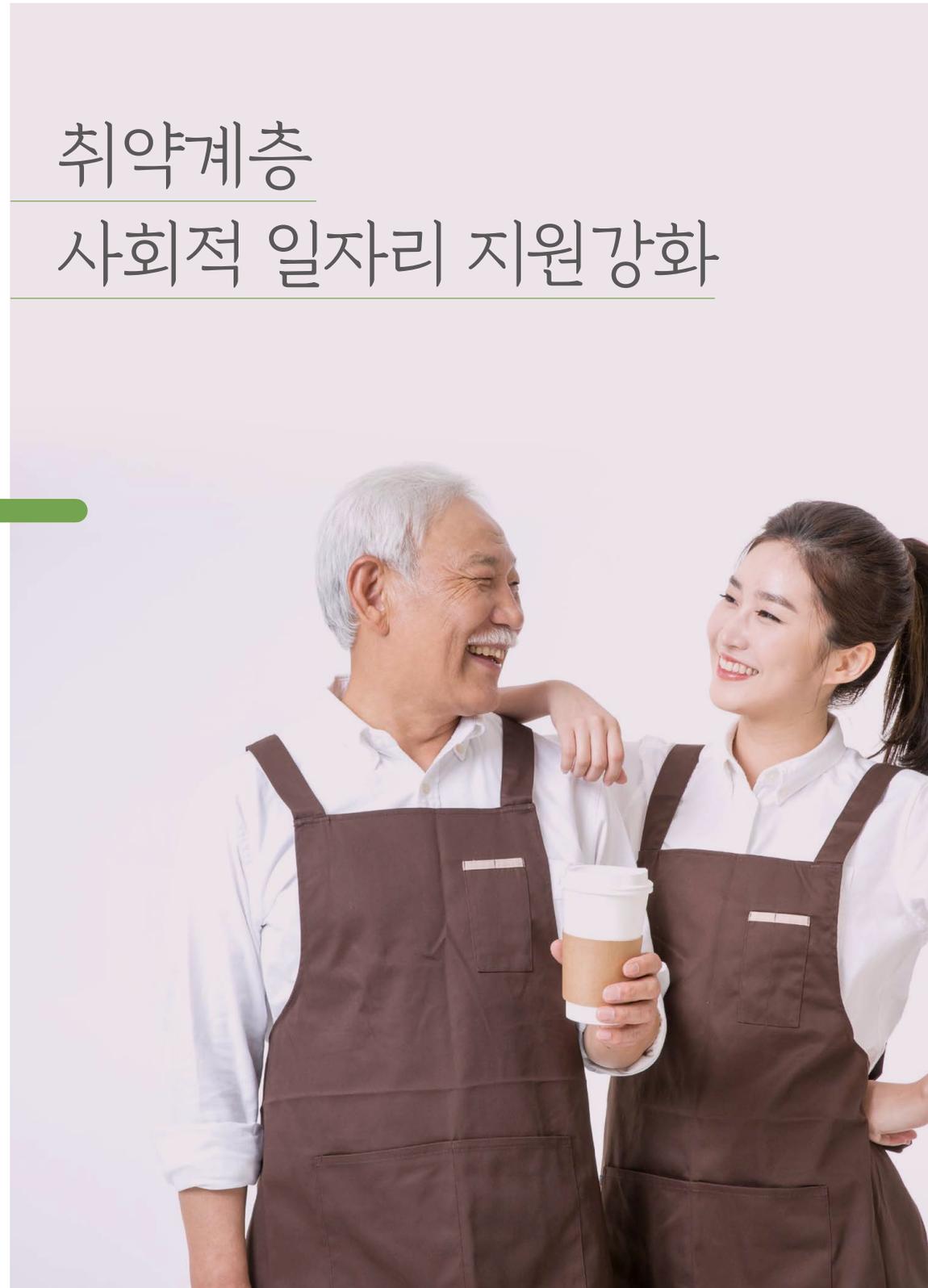
분야별	2015년 최종		2016년 최종		2017년 본예산		증감		비고
	금액	비율	금액(A)	비율	금액(B)	비율	B-A	증감	
도 전체	186,422	100%	189,615	100%	196,703	100%	7,088	3.7%	
복지관련	64,617	35.0%	70,380	37.1%	72,319	36.8%	1,939	2.8%	
보건복지국	37,978	20.4%	41,097	21.7%	42,912	21.8%	1,815	4.4%	
(남부청)	29,569	15.9%	31,901	16.8%	33,277	16.9%	1,376	4.3%	
(북부청)	8,409	4.5%	9,196	4.8%	9,635	4.9%	439	4.8%	
여성가족국	26,639	14.3%	27,358	14.4%	27,541	14.0%	183	0.7%	
도시주택실 (주거급여)	716	0.4%	1,925	1.0%	1,866	0.9%	△59	△3.1%	

※출처 : 경기도 보건복지국(2017년 주요 업무계획)

# 취약계층 사회적 일자리 지원강화

넷.

福祉京畿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제안



## 삶의 보람있는 일과 사회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노인일자리 참여 희망 노인, 공급에 비해 4배 많음

-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비율 전체의 4.3% 불과, 희망자 18.2%
- 노인일자리 지원은 복지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격임

### 소득증대에 따른 노인빈곤 감소효과 추계(상대빈곤)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시) 46.6% → 43.9%로 2.7% 감소함.

(근로소득 20만원 증가시) 46.6% → 38.1%로 8.5% 감소함.

(기초연금 10만원+근로소득 10만원 증대시) 46.6% → 39.1%로 7.5% 감소함.

(기초연금 10만원+근로소득 30만원 증대시) 46.6% → 29.9%로 16.7% 감소함.

\*출처 : 노인일자리종합계획(2018~2022)수립에 관한 연구. 지은정

문제	핵심과제
<b>역량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훈련 미흡</li> <li>- 체계적계획·관리미흡</li> <li>- 건강관리지원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훈련 강화</li> <li>- 개인별활동계획수립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li> <li>- 건강관리지원</li> </ul>
<b>활동기반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달체계</li> <li>- 열악한 처우·전문성부족</li> <li>- 참여노인보호 미흡</li> <li>- 법적근거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달체계 개편</li> <li>- 전문인력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li> <li>- 실버보험 도입을 통한 참여자 보호</li> <li>- 법적 기반구축</li> </ul>
<b>안정된 일자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추가)고용정책 부족</li> <li>- 사회공헌지원 부족</li> <li>- 시장형 발전 정책공백</li> <li>- 질적 성장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친화우수기업 발굴</li> <li>- 고용창출형 사회공헌 지원사업</li> <li>- 브릿지 사업</li> <li>-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개편</li> </ul>
<b>의미있는 사회활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활동 중심</li> <li>- 정형화된 사업지원</li> <li>- 낮은 욕구충족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훈련 강화</li> <li>- 개인별활동계획수립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li> <li>- 건강관리지원</li> </ul>

### 전국·서울·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2016)

시도	총계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	
	배정사업량	추진실적	배정사업량	추진실적	배정사업량	추진실적	배정사업량	추진실적
전국	366,891	380,916	283,187	290,625	68,454	77,734	15,250	12,557
전국	39,661	45,494	36,275	37,233	5,448	6,306	2,357	1,955
전국	48,943	49,411	31,815	30,635	14,935	16,959	2,193	1,817



# 청년 주거복지 지원

## 다섯.

福祉京畿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제안

### 2017년 청년실업률 사상 최고 기록, 102만명\*

#### 경기도 청년주거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정책 수립 지원해야

- 청년 실업률과 저임금 구조 속, 청년 주거문제 사회이슈로 급부상
- 대학, 중소기업 등 찾아가는 서비스로 청년주거지원 정책 적극적으로 펼쳐야
- 중앙정부와 다수의 지자체,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순위 상향

#### 청년층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주택 공급정책 수립

- 대학교 인근 교통시설 접근성이 높은 곳에 저렴한 공공의 셰어하우스 공급확대, 민간 셰어하우스 공급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
- 청년층의 월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주거수당 지급
- 1, 2인 주거소요 및 공공주거 여건을 반영한 최저주거기준 재설정
- 경기도시공사를 주거복지,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으로 탈바꿈
- 따복하우스 입주대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한정하지 않고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알바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포함시키며 향후에는 직업 등에 관계없이 일정소득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함.

\* 청년실업률 사상 최악...작년 실업자 102만명(서울일보, 2018.1.10.)  
<http://www.seoul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478>

1인 청년 주택가격 및 임대료 부담(수도권, 2006~2016)

(단위 : 억원,%)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보증금	월세
2006	16,434	4,558	777	34.1
2008	16,842	4,286	1,125	34.3
2010	18,741	5,581	1,092	36.1
2012	16,143	8,100	1,051	37.1
2014	17,263	6,962	1,441	43.5
2016	20,491	7,393	1,298	44.6

※ 출처 :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福祉京畿 실현을 위한 34대 사회복지 분야별 정책과제

하나. 노인복지분야 6대 과제

둘. 아동분야 5대 과제

셋. 장애인분야 15대 과제

넷. 지역복지분야 8대 과제

## 노인복지분야 6대 과제

###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 경기도 뉴시니어세대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경기도형 50+센터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 인생2모작 또는 3모작을 위한 준비 필요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발표(2018)
- 장년기 유휴인력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광역단위 거점센터 설치필요
  - 노인복지 및 노년기에 필요한 사업과 예산 등이 경기도에서는 각 과나 부서로 분절되어 있음

#### 정책제안

- 경기장년행복센터 또는 경기도장년종합지원센터를 거점지역별로 설치하여 예비노년세대에 대한 서비스 제공
  - 기존의 노인 집단만을 위한 서비스 기관에서 벗어나 지역의 여러 기관들과 연계와 협력을 통한 장년, 베이비붐세대, 예비노인 등을 포함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허브 기능과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함

#### 비고

- 서울의 경우 인생이모작센터, 50+센터 등 뉴시니어 또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사업 진행(시립도심권50+센터, 영등포구립50+센터, 동작구립50+센터, 노원구립50+센터)
- 일본(시니어액티브살롱 '유유지적'운영), 미국(이터테이먼트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

###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은 매년 결정되는 수가제에 의하여 종사자 임금을 책정, 인건비 기준이 최저수급에 맞추어져 있어 매우 낮고 처우도 아주 환경도 열악하여 개선필요
  - 같은 시설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종사자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없음

#### 정책제안

- 경기도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및 보수여건을 향상 시키고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사기를 복돋기 위하여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을 요양원 종사자로 확대
  - 사회복지법인 노인요양시설부터 처우개선지원 우선 추진하여 점차 대상확대

#### 비고

-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아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을 적용 받고 있고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5조 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운영중임

###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조례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은 2008년부터 10년 동안 예산 동결로 인해 사업의 한계성 및 인건비 부족으로 고용 불안정성 증대
  -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만 사업수행, 미 운영 지자체에(연천군,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광명시, 과천시, 화성시)는 재가노인복지 사각지대 발생

#### 정책제안

- 조례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사업 운영에 있어 안정성 확보
  - 운영비(보조금)지원의 근거 및 기준 마련
  - 서비스대상자의 확대
  - 서비스제공기준과 범위에 대한 적정성, 신속성, 용이성 등 확보
  - 시설평가에 있어서 적정성, 합목적성 확보 등 기반 마련
  - 도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킴으로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비고

- 경기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52개소(본청 41, 북부청 11)
  - 이용인원 : 4,415명(본청 3,440, 북부청 975)
  - 저소득대상자(80%이상), 기타 긴급지원 대상자(20%이내)

###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 경기도 재가노인의 안정적인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재가노인 종합복지센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기능강화) 설립 및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재가노인종합복지센터로 개칭 및 기능강화를 통해 고령화 시대의 재가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필요.

#### 정책제안

1. 재가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추진(시범사업)
  - 서비스 통합관리, 공공일자리창출, 서비스 영역 및 대상확대, 전문성 강화, 자원활용 확대 등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 확대에 맞는 일자리 및 종사자 확대
  - 1개소당 10명 이상의 인원확충

# 아동분야 5대 과제

##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인력충원 및 시·군별 설립확충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는 평균 1.2명, 사무원은 0.9명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회복지사와 사무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280시간, 256시간으로 수행하는 업무량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내 재가노인 복지사각지대 예방과 위기 및 취약노인 관리를 위해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확대운영 필요

#### 정책제안

- ①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예방과 노년의 지속거주(AIP)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미운영되는 지자체가 없도록 설치확대 및 통합사례관리 등을 위한 센터 인력충원
- ② 재가노인의 욕구변화에 대응하여 전문인력(건강관리사, 방문상담원, 재활치료사, 방문간호사 등)배치

#### 비고

- 24개 시군(본청 41, 북부청 11)
  - 미운영 시군 : 연천군,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광명시, 과천시, 화성시.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인원 : 4,415명

##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 경기도 노인일자리를 위한 시니어클럽 인력충원 및 시·군별 설립확충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일자리의 효과성은 이미 10년간에 걸쳐 검증되어 온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는 중요한 정책임. 노인일자리는 단순히 노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혜택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함.
  - 지난 10여년간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약1,480% 증가한 반면 이를 수행해야 하는 수행기관은 약26% 정도의 증가로 사업량에 비하면 현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정책제안

- ① 복지부는 앞으로 4년간 지금의 2배이상(80만개)으로 일자리를 늘릴 예정이므로 도내 16개 시니어클럽에 전문 수행인력을 2019년부터 꾸준히 충원
- ② 경기도내 16개 시·군에만 설치되어 클럽을 31개 전 시군에 속히 설치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를 제안함.

#### 비고

- 수행기관중 업무비중이 가장 높은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1항제2호(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등)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임.

## 경기도아동복지협회

### 퇴소아동 자립통합서비스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경기도는 퇴소아동을 위한 공식적인 자립생활관이 하나도 없으며 경기도아동복지협회가 운영하는 5층 다세대주택(수원 소재, 원룸 27실)이 민간자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 퇴소이후 주거형태로 월세, 고시원, 친구집 등이 가장 많으며 심지어 노숙을 경험한 경우도 있는 등 주거문제가 매우 불안정함

#### 정책제안

- 현재 운영중인 민간 자립생활관(경기도아동복지협회 상상드림센터)의 공공화를 통한 안정적인 생활관 운영과 주거, 취업, 학업 등 다양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경기도아동복지협회

### 아동양육시설의 변화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시범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보완적 아동복지서비스 수요증가 및 제공요구 : 아동복지현장은 현재 지역거점의 보완적 아동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나 공급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아동복지 인프라 미비 실정임.
  -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 및 아동 양육기능 저하에 따른 보완적·원스탑·지역거점 형태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

#### 정책제안

- 아동 및 가족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
  - 단순보호 및 양육에서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필요
    1. 양육시설에서 장애아동 및 치료 전문 아동가족서비스로 전환
    2. 치료형 공동생활가정 및 치료시설(RTF)의 운영
    3. 상담서비스와 같은 이용서비스 확대
    4. 지역특성에 따라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등의 복합 운영 모색 (예: 대도시 이용시설 확대, 중소도시 생활시설 확대 등)
    5. 장애아동과 요보호아동의 주관 정부부서가 다른 점에 대한 합의점 모색, 관련법 및 지자체 조례의 개정 필요

경기도아동복지협회

### 경기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아동 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 18세미만 모든 아동들이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말함(국제 인증).
- UN기준 만17세까지, 학교밖 청소년 28만명, 아동청소년은 줄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문제는 심각해짐.
  - 경기도의 경우, 현재 경기복지거버넌스를 통해 시범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아동위원회 운영을 시·군단위로 확장시킴이 필요함.

#### 정책제안

-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만들기」조례 제정 추진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지역사회의 책무
  - 기본계획의 수립,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지역사회 환경조성
  - 아동영향평가, 민간클러스터 조성, 아동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 아동청소년정책 발굴 및 홍보, 예산의 지원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행규칙 등

#### 비고

- 아동친화도시 인증현황 : 서울 성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송파구, 군산시, 완주군, 부산 금정구,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2018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도협의회

###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전담인력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에는 763개 지역아동센터에 21,682명의 아동이 이용중임. 이는 전국대비 센터수 18.6%, 이용아동기준 19.8%를 차지하고 있는 수치로, 지역아동센터의 수와 이용아동 모두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음.
  - 2016년 12월말 전국 4,107개 센터에 109,661명이 이용중
  - 2018년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도 급식지도는 기본프로그램으로 명시하고 권장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7).

#### 정책제안

- 지역아동센터 급식전담 인력이 지원하여 양질의 식단을 제공해야 함
  - 2017 경기도지역아동센터 급식 관련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경기도 지역아동센터 남부지원단, 2017)에 따르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67.9%가 센터 급식담당 인력지원을 제시함

#### 비고

-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아동복지법 52조 8항)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도협의회

###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재(再)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경기도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은「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 2013년 8월에 아동보호 및 복지 관련 통합 조례로 제정된 것임.
  - 2017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연구(2017. 12)에 따르면 통합 조례는 주로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제7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서 일부 항목에 대한 지원만 명시되어 있는 상황임.

#### 정책제안

-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정 :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재/제정을 통해 센터의 방향성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 즉, 센터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사항과 운영,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 조례 신규 제정이 어려울 경우, 현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지역아동센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함.

## 장애인분야 15대 과제

장애인분야 공동의제

### 도지사 직속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 사회복지의 지방이양정책을 시행하면서 장애인복지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 별로 장애인복지위원회(민관협의 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함
- 현재 경기도는 사회보장위원회 내에 장애인복지분과를 설치하여 논의를 해오고 있으나 대부분 관 주도 방식의 형식적인 논의수준에 머물고 있음.

#### 정책제안

- 경기도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 내의 “분과”가 아닌 도지사 직속(혹은 사회통합부지사 직속)의 위상을 가진 민관협치 기구로서 “경기도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실질적인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경기도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심의 및 조정기능
  -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 발전방안 등 관련사항 논의 등 기능

#### 비고

- 중앙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중임
- 경기도등록장애인 수 : 522,437명(2016년 기준)

장애인분야 공동의제

### 중증 성인장애인 연금지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1~3급의 중증장애인이 장애 때문에 한 달에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21만 6000원 수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 이 비용을 보전해주고자 매월 일정액 지급하는 장애연금 부가급여는 2만~8만원(18~64세), 장애수당(3~6급)은 2만~4만원에 불과함
- 장애인육구조사에서도 소득보장이 제1순위 나타나고 있음에도 경기도에는 2017년 12월 말 현재 전체 등록장애인 52만명중 6만7천여명만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정책제안

- 중증의 재가 장애당사자들의 기본소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칭“경기도장애인연금”을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10만원씩 추가지급
  - ※ 추계예산액 : 67천명 x 10만원 x 12개월 = 804억원
  - 기존의 수급자에게만 지급하는 도비 장애수당 액 약100억을 대체하고, 그 비율로 도와 시군비로 계상하면 도비는 약175억원 소요예상
  - ※ 804억원 -100억원= 700억원 x 도비비율 평균25%적용 = 175억원

#### 비고

-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복지비 지출 비율은 0.49%로, OECD 국가 평균(2.19%)의 4분의1, 장애인 복지비 지출 규모가 가장 큰 덴마크(4.71%)의 9분의1 수준임

경기도농아인협회

### 농아인의 알권리 실현 정책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에서 농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수어통역센터가 경기도수어통역센터 지원본부 및 31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으며 2017년 32곳 수어통역센터 농인이용자 건수 및 문맹 이용자 건수가 140,928건임
  - 청각장애인들은 각종 위험상황, 선거, 주요정책 등에서 듣지 못하는 이유로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음.

#### 정책제안

- 농아인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
  - 경기도재난안전처에 농인을 위한 재난안전 방안마련
  - 공직선거법 법안 개정
  - 농인을 위한 한국수어 선거공보 제작
  - 경기도 중요시책 및 경기도지사 연설시 수어통역 동시 방영 의무화 등

#### 비고

- 경기도내 등록청각장애인 수 : 51,459명 / 전국 27만여명으로 추정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 장애인복지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내 34개의 장애인복지관, 1,300여명의 분야별 전문종사자 근무
  - 변화되는 장애인복지 정책과 패러다임에 따라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 추진 필요함. 현 복지관 운영을 위한 지원예산은 경직성 경비(인건비, 운영비)에 한정,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과 시민을 위한 지자체별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음
- 장애인복지관 전문 인프라 및 협회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지역특화(균형발전) 사업을 자체개발 보급의 사업 추진 필요 절실함

#### 정책제안

- 기관별 특화사업 추진팀 구성 : 도단위 추진단 결성
-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 교류 및 필요한 교육과 자문을 통해 사업의 역량을 키우고 현실 적용 가능한 장단기 공동사업 기획 및 자원개발추진, 사업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성과 창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파

#### 비고

- 경기도내 장애인복지관 수 및 종사자 수 : 34개소 1,300여명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 ‘경기도 장애인단체 지원조례’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장애인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육성’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광역(대전, 부산 제외) 및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들은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임의규정”으로 대부분 형식적인 내용이며, 장애인단체보다는 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이 대부분임.
- 장애인 단체는 당사자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법정단체임에도 사업운영을 위한 기본예산(사업비, 인건비, 운영비)의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

#### 정책제안

- 장애인단체 육성은 국가가 법으로도 명시하여 권고하는 만큼 장애인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 재원확보, 질 높은 당사자단체의 서비스 제공을 지원해야 함
  - 장애인단체의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지원 명시

#### 비고

- 경기도 13개 장애인단체소속 회원 수 : 총 20만여명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 소규모시설지원센터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시설정책에서 “소규모 시설정책”이 강조되면서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체험홈, 그룹홈 등의 시설이 점차 증가되면서 종사자들에게 노동조건악화가 가중되고 있음
- 소규모시설의 문제점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임. 현재 그룹홈 이용인 4명당 종사자 1명이 배치되는데, 보조급 해당 인력의 1명의 업무는 “영양식단, 조리, 행정, 케어, 운전, 시설관리, 교육, 인권, 기타”를 수행해야 함.

#### 정책제안

-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주 40시간을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이 지원되어야 함(휴가, 병가, 기타 긴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음)
- 소규모정책을 뒷받침 하고 원활한 소규모정책을 위해서는 소규모시설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해소해야 함(인력지원 및 개별시설 지원 허브사업 실시)

#### 비고

- 경기도내 소규모- 경기도내 소규모 장애인복지 유형별시설 수 : 281개소
- 경기도내 소규모 장애인복지 유형별시설 종사자수 : 992명
- 경기도내 소규모 장애인복지 유형별시설 수혜자수 : 3,371명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 탈시설 지원규정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탈시설화 정책으로 자립지원센터에서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자립의 목적으로 자립을 지원하고 사업이 끝나면 개인이 혼자 독립을 해서 살아가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됨
- 자립을 목적으로 탈시설을 시도하여 자립지원센터의 도움으로 2년간의 자립훈련을 받고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혼자 사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다시 시설로 입소를 해야 할 경우 재입소가 어려움

#### 정책제안

- 장애인시설은 정원을 초과해서 입소가 가능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장애인시설에서 정원을 10% 초과해서 입소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및 지침을 추가적으로 제정해야 하며 긴급을 요할 시에는 입소를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함.
- 추가입소인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는 종사자의 증원도 같이 규정 되어야 함.

#### 비고

- 경기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수 및 이용자 수 : 98개 시설, 4,454명 이용중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 경기도 내 의료서비스가 강화된 최종증 외상장애인을 위한 집중케어센터 시범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경기도내 외상장애인은 장애특성상 의료적 서비스가 필수적이지만 의료적 설비나 인력이 부족하여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의료적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을 선정하여 기능보강하고, 의료환경과 의료인력을 보강하여 외상장애인을 위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외상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특성화를 통해 최종증 외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

#### 정책제안

- 경기도내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중 최종증 외상장애인 특별시설을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함(시범사업후 경기도 4개 권역별 확대설치)
- 1개시설 당 시범운영 필요인력 : 4.7명당 2명 → 4.7명당 3명(3교대 가능)
- 간호인력 배치기준 : 현 요양시설과 동일(25명당 1명, 3교대 가능)
- 운영비는 현재 기준을 적용하되 추가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추가지원

#### 비고

- 경기도내 최종증 장애인수: 98개 시설 516명(전체 4,454명 대비 11.6%)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개별적인 삶 지원을 위한 여건 개선 (가칭, ‘사례지원교사’배치)

#### 현황 및 문제점

- 휴먼서비스가 핵심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은 근로기준법조차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임. 발달장애인을 가장 근접하여 서비스해야 하는 생활재활교사의 배치기준은 4.7명당 2명으로 1년 365일 24시간 기준임.
  - 즉, 교사 1명이 2교대로 하루의 연차도 없이 5명의 장애인을 케어 해야 하는 것이고, 2명중 1명이 연차를 가면 10명을 동시에 케어 해야 함(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평균 12명의 장애인을 교사 1명이 케어 해야 하는 실정)

#### 정책제안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으로 1:1 특별케어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2명당 1명의 직원 배치를 기준으로 약300여명의 특별 전문인력 지원
  - 소요예산 : 약 86억원 추정

#### 비고

- 98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4,454명
- 도전적 행동으로 1:1케어가 필요한 장애인수 618명((13.8)
- 도전적행동 장애인2명당 교사1명배치기준 309명(6.9)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및 문제점

- 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등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정책제안

- 경기도 직업재활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원조례 제정 제안
  - 목적 :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 삶의 질을 향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 개보수, 발전계획수립 및 시행,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 등에게 편의시설과 보조기구 및 이동용 차량지원, 근로장애인 희망지원금과 훈련수당 지급,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등 명시

비고

-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 및 근로장애인 수 : 103개소 / 1,317명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 탈시설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 및 유형의 다양화'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도전적행동(위험행동)을 가지고 있는 이용인들이 주로 이용하게 됨.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지만 뇌병변장애인으로 주간보호시설 외에는 갈 곳이 없음.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족과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는 대안시설로 기능하도록 확대설치 및 다양화 필요.

정책제안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대 장기계획마련 : 시군의 장애인 현황 및 욕구파악후 장기 설치계획 수립 추진(뇌병변, 시각,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설치)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다양화 모색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최후의 복지시설임. 따라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통해 문화,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조기노화 장애인을 위한 중장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 40대 이상의 조기노화를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중장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비고

-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 : 113개소 (2016.12월)
-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장애인 수 : 2,161명 (2016.12월)
- 주간보호시설 이용 대기자 수 1,789명 / 시설부족 수 56개소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현실화(인력배치기준 준수)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의사소통과 도전적행동(위험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므로 적정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필수적임.
  -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1개 주간보호시설에 기본 인력배치 기준인원을 5명으로 명시하고 있음(최소 이용인 10명 기준)에도 31개 시군에서 이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음.
    - ※ 1개 시설에 평균 15명의 장애인이 이용 / 종사자는 평균 4명 배치

정책제안

- ① 인력배치 규정준수 : 1시설당 시설장 1명, 기능직 1명, 사회재활교사 3명
- ② 사회재활교사 적정인원 배치 : 이용장애인 4명당 1인
  1. 이용인 10명시설에 사회재활교사 3명 배치
  2. 이용인 15인시설에 사회재활교사 4명 배치
  3. 이용인 20인시설에 사회재활교사 5명 배치

비고

- 경기도 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113개(2016년 12월) / 2,161명 이용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 고령장애인 정책 '고령 정신장애인의 재활 서비스 지원 정책 수립'

현황 및 문제점

- 정신보건시설 유형별 입소이용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5.12.31기준) 50대가 약 34.1% (27,674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200년부터 2009년까지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나, 2010년 이후 50대가 전체 입소 입소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령화되고 있음 (2016. 국가 정신건강현황 2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 경기도의 경우에도 50대 이상의 입소, 이용자의 수가 7,886명(68.3%) 차지

정책제안

- 고령화된 정신장애인들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화된 유형의 재활시스템 구축 필요
- 정신재활시설의 유형 다양화 (고령 정신질환자 이용 가능 시설 신설)
  - 기존 재활시설에는 회복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 실적에 의해 노령회원의 취업, 재활에 한계가 있어 시설이용에 제한이 되며, 이용기간의 제한(3년)으로 인한 훈련개념의 시설 운영 방향 제시

비고

- 경기도 정신보건시설 입소이용자 연령별 분포 : 전체 16,123명중 50대가 약 7,886명(68.3%)로 노령화(15.12.31기준)
- 경기도 정신장애인 수 : 18,215명(2016.12월)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 경기도 정신장애인의 회복 권리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2016년 12월 경기도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정원은 786명으로 지역별 등록 장애인수 대비 수용률은 1~1.8% 수준이며, 이들은 경기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95%) 부족한 상황.
  - 경기도 인구 12,716,780명중 유병율(총 인구의 1%) 127,168명으로 볼 때 경기도사회복지시설에서는 0.6%의 수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내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지역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신재활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균형적인 유형별 시설 설치를 위한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정책제안

-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필요 시설설치를 위한 기초조사 실시 (시설 설치시 경기북부지역 감안)

#### 비고

- 경기도사회복지시설 수 : 15개시 47개소 (2017. 3월 현재) / 시설정원 786명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 도내 고령장애인 지원대책 수립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장애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은 32.5%(2005년), 36.1%(2008년), 40.8%(2011년), 43.3%(2014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50세 이상 인구의 경우 62.7%(2005년), 68.1%(2008년), 71.5%(2011년), 74%(2014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장애인실태조사, 2005; 2008; 2011; 2014)
  - 장애특성상 조기노화가 진행되는 경우 대책 시급

#### 정책제안

- 고령장애인지원센터(가칭) 필요
  -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제고 : 욕구조사 등
  - 고령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일반 장애인과 다른 고령에 맞는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 고령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 여가, 문화 등

#### 비고

- 경기도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수 : 226,737명(43.4%), 2016. 12월

경기복지시민연대

### 경기도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① 1990년대 이래로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지역복지 현장에서는 중앙부처 중심주의, 피상적인 주민의 참여, 공공 주도 민간 협력 형식주의, 민간 동원 현상 등 전달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됨
- ② 요양, 보육 등 시장화된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각 기관 간 자원연계 미비, 역할부담 불명확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저하가 지속화됨. 사회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기도형 플랫폼이 필요함.

#### 정책제안

- ① 개별맞춤형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수단으로 통합사례관리 강화
  - 통합사례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고용안정과 역량강화, 사례관리를 수행해온 기존 민간조직과의 협력이 필요함.
- ② 경기도형 사회복지서비스 진흥원 모형개발
  - 단위 광역 지방정부의 경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모형과 다른 별도의 사회복지서비스 진흥원 모형 개발이 필요함. - 광역 도와 시군이 프랜차이즈(franchise)로 연결된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지역단위컨트롤 타워 역할 가능(광역-시군간 역할분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 교육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사 확대 배치

#### 현황 및 문제점

- 2017 경기도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 만족도 평균 91%이상 만족(교육복지사 역할이 매우 큼)
  - 교우 관계 향상 등 학교생활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긴급 지원으로 가정과의 연계 및 경제적 지원 등 정서적 안정감 증진에 기여
  -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경기도 초·중·고교 2,427교 중 4.9%(117교)만 교육복지사 배치 (대부분 비정규직)

#### 정책제안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 교육복지사 단계별 확대 배치
  - 1교1인 교육복지사 배치목표 추진
  - 우선배치대상 : 구도심지역, 고등학교(특성화고) 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초·중·고교내 저소득층 학생
  - 교육복지사의 안정적 고용을 위한 체계구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보.

#### 비고

- 전국 초·중·고교 11,841교 중 1,533교(전체학교 대비 12.9%)에 교육복지사 배치함.
  - 지방자치단체사업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학교(113교) 포함 시, 9.7%(230교)
  - 지방자치단체사업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학교(125교-위탁포함) 포함 시, 10.2%(242교)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위상강화와 연계·통합”을 위한 경기도사회복지타운 건립

####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사회복지 직능 및 유관기관의 경우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어렵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내 사회복지 단체의 불안정한 사무국 운영과 단체별 공간임대료 및 운영비 등의 재정적 부담은 업무효율성, 네트워크 기능저하를 초래함
  - 질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을 위해 종사자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교육훈련시설 부재에 따라 전문화 교육진행에 어려움
  - 특히, 북부지역의 경우 직능 및 유관기관이 남부 중심으로 설치되어 북부지역의 거점기관이 전무한 상황임

#### 정책제안

- 경기지역 사회복지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 단위 사회복지 직능 및 유관단체의 공간통합을 통한 사회복지 단체 상호간 기능성 연계강화 및 ONE-STOP Service 체계와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훈련 등 다양한 통합적 사업전개를 위한 “경기도사회복지타운”건립을 제안함(충북형 제안)

#### 비고

- 사회복지회관 설치지자체 수 : 8개 지자체(광주, 경남, 인천, 제주, 충북, 강원, 전남, 전북)

###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 자활사업을 위한 무상 공공임대시설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2017년 12월말 현재 전체 33개 지역자활센터 중에서 20곳은 사무실 임대비 부담을 안고 있음(13곳 무상임대)
  - 전세보증금 지원제도가 있으나 전세권 설정기피와 월임대료 선호
  -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은 인건비 90.5%, 운영비 9.4%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공공부조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경제의 주요한 인프라로서 지역자활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시설지원과 운영 지원에 대해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

#### 정책제안

- ① 센터의 교육장, 상담실 등 필수적인 공간마련이 가능한 국·공유지 무상임대
- ② 지역자활센터 독자적 건물(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지원
- ③ 공공시설내 판매시설의 무상지원 확대
- ④ 지역자활센터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운영비 지원

#### 비고

- 경기도내 지역자활센터 수 : 33개 / 이용자 25,000여명(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 주거 약자를 위한 경기도형 사회적주택 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통계에 의하면, 50세 이상의 월세거주자는 33.9%, 1인가구의 월세거주자는 43.1%를 차지하고 있었음. 여전히 월세 비중이 높음(2016년 기준)
- 경기도내 저소득주민 주거현황 조사에 따르면, 단독거주자(1인거주자)가 2017년 기준 전체 참여주민의 67%를 차지하여 5년 전의 40% 정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함. 또한 참여 평균 연령대가 50대 이상이 급격히 증가함

#### 정책제안

- ① 경기도 공공부분 매입임대를 활용한 “경기형 주거약자 사회적주택 제도”신설
- ② 지역자활센터를 활용한 매입임대주택 관리 진행 : 자활의 주거복지사업단(인테리어)과 청소사업단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창출과 공익적 서비스 지원
- ② 매입임대주택 입주인의 사례관리 진행
  - 경기도 지역자활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례관리를 진행해 취·창업지원 및 사회자원 연계 지원

#### 비고

- 경기도의 공공부분 기존주택매입임대 재고는 지자체 931호, LH 18,100호로 합계 19,031호에 달함(2016년 기준).
-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4~5%선으로, 영국 22%, 독일 20%등 20%내외의 수준에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고, OECD 국가평균인 1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경기도노숙인시설연합회

## 고령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고령 노숙인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령화(2025년)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 전체 노숙인의 7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 노숙인 으로 분류됨.
- 경기도의 노숙인 시설 중 고령 노숙인에 대한 재활, 요양 시설은 4곳이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활시설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신체적 요건의 문제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

#### 정책제안

- 조례의 주요내용
  - 지역별 주요 자활 시설에 대해 고령노숙인 특성화사업지원
  - 노숙인 단기보호 지원근거 마련
  - 지역사회 연계지원명시

#### 비고

- 경기도 노숙인 수 : 977명
- 경기도 노숙인 시설 수 : 22개소
- 경기도 노숙인 시설 중 고령 노숙인 재활, 요양 시설수 : 4개소

경기도노숙인시설연합회

## 주거취약계층(노숙인 등)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노숙인 시설 입소자가 주거지를 마련하여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사회복지관 및 행정기관 등과의 연계성을 통한 사례관리가 필요함.
- 현재 노숙인 시설에서 자립기반(주거)을 마련하여 사회로 복귀하였을 경우,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노숙 또는 시설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정책제안

- 지역사회의 복지관 및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 사례관리 필요.
- 전담인력 충원

경기도노숙인시설연합회

## 노숙인 자활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노숙인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생활환경 및 안전에 위험을 받고 있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함.  
- 노숙인 자활시설의 경우 재활시설과 다르게 기능보강 사업 및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 시설이 노후되고 하자가 발생 되어도, 시설 개보수가 힘들어 입소자들의 열악한 생활환경 및 안전위험에 노출 되고 있음.

### 정책제안

- 시설현대화를 위한 연간 기능보강 예산 지원(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참여단체 현황

연번	단체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고
1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경학	031-213-8551	공동대표
2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	이은경	031-222-6097	공동대표
3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회장	고일웅	031-311-4482	공동대표
4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일규	031-252-7554	공동대표
5	경기도아동복지협회	회장	한경희	031-252-3060	공동대표
6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김진식	031-244-7015	공동대표
7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	정 권	031-548-2610	공동대표
8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민수	031-215-4399	기획조정위원장
9	경기도노숙인시설연합회	회장	김치현	032-329-3164	
10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회장	배승룡	031-840-5303	
11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조국남	031-222-6097	
12	경기도농아인협회	회장	신동진	031-252-6420	
13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순선	031-220-7915	
14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김진식	031-213-7722	
15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회장	권치영	032-668-4107	
16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강기태	031-292-0795	
17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성치도	031-256-6073	
18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회장	박영욱	031-401-1511	
19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전창호	031-244-1030	
20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김희숙	031-391-8025	
21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	김미경	031-373-1900	
22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회장	김기호	031-247-7721	
23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	회장	황홍구	032-325-3002	
24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박정선	031-232-3036	
25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도협의회	회장	강신우	031-407-3001	

6.13 지방선거

福祉京畿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제안 요약집

**발행일** 2018. 5

**발행처** 경기도사회복지연대

**기획총괄(간사단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SK허브블루 6003호

**전화** (031)213-8551

**팩스** (031)213-8557

**E-Mail** ggcsw@hanmail.net

